

[별표 9] <개정 1987.8.31>

검정유효기간(제29조 관련)

1. 택시미터	1년
2. 적산식가솔린미터	2년
3. 가스미터	5년
4. 수도미터	6년
5. 오일미터	5년
6. 액화석유가스미터	2년
7. 적산열량계	3년
8. 전력량계	7년